

질의일자 : 2011. 9. 19(월)

순 번	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0919-1	<p>1. 선사도 입찰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</p> <p>2. 선사도 지역공동수급체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</p> <p>3. 선사는 예전처럼(2008년 3자물류전환시) 여러 입찰업체마다 협정서나 MOU에 서명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.</p>	<p>1. 입찰공고문 p.2~p.3의 3. 사업참가자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입찰자격이 부여됩니다.</p> <p>2. 지역업체라함은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영업소(본점)의 소재지를 “제주특별자치도”에 두고 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.</p> <p>3. 입찰공고문 p.3의 4. 사업참가구역에 명시하였듯이 모든 사업참가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1개 구역(1개 공동수급체 구성)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, 차후 복수지원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모든 업체의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</p>

순 번	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0919-2	<p>1.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항목 중 “수행경험(실적)”, “계약 매출액 비율”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인 구비서류(표준계약서) 준비에 있어 단 기간 내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. 따라서 총 매출액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라면 공시자료(회계감사자료 등)등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</p> <p>2. 계약특수조건 6 Page 제9조(팔레트 운영)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. 제②항에 따르면 “해당 팔레트는 우리공사 자산으로 ‘을’에게 공급되며 ‘을’은 팔레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매 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‘갑’에게 보고한다.”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유팔레트의 개수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정확한 가격제안을 위해서 보유 팔레트 개수와 현 보유중인 팔레트 외에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</p>	<p>1. 정량적 평가 기준의 “수행경험(실적)”, “안전성”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(표준 계약서 사본)의 경우 대외비 및 작성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(표준)계약서 사본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증 받은 자료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동일한 물류사업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. 단, 우리공사의 확인요청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자료와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②항은 삭제되었습니다. 수정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팔레트 운영부분은 물류운영사가 제안하고 자체 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.</p>